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80

발의연월일: 2025. 2. 3.

발 의 자:서명옥・박준태・조정훈

박정하 • 박정훈 • 배준영

강명구 · 서천호 · 조지연

주호영 · 진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환자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71명과 78명을 기록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있어 감염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필수로 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책임자 모두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6제3항).

한편,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위생 · 안전·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 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산후 조리원에 대한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 15조의20).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여야하고, 그 책임자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0제1항 중 "평가할 수 있다"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② (생 략)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 ③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 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 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 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 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 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 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 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 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 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 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여 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 야 하고, 그 책임자도 해당 교 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육을 받아야 한다. 받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0(산후조리워 평가) ①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 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 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overline{(3)}$ -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			
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표할 수 있다</u> .	<u>공표하여야 한다</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